

붙임1-5.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운영지침 (교무처 학사지원팀)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정 2017.2.27.

전면개정 2026.6.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설치, 운영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기주도설계전공”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기주도설계전공은 삼육대학교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이수 자격)

- ① 본교 학부 재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은 제1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재학생에 한한다.
-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신청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이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⑤ 특별한 사업 목적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전공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학점 및 편성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다.

제5조(소속)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소속은 자유전공학부로 한다.
- ② 학과(부)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이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한 전과 절차에 따라 자유전공학부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졸업 전공으로 하며, 학사관리는 자유전공학부에서 담당한다.
- ④ 자기주도설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기존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을 유지한다.
- ⑤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지도, 수강신청 및 졸업요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유전공학부가 관장한다.

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변경, 운영, 폐지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원 2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장, 서기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및 승인
 2.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심사
 3. 자기주도설계전공의 변경 및 폐지
 4. 전공명 및 학위명에 관한 사항
 5.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중도 포기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7.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청 기준) 자기주도설계전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참여 학생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전공 지도교수를 지정할 것
3. 신청 전공의 학문 분야가 본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 전공과 차별성이 있을 것
4. 기 설치된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등과 중복되지 않을 것
5. [별표1]에서 정한 인력양성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6.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

제8조(신청 및 승인 절차)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신청은 매 학기 교무처장이 정한 기간에 한다.
- ②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이수계획 수립 및 제출
 2. SU-PREME센터 설계상담
 3. 자기주도설계전공 지도교수 선정
 4. 자기주도설계전공 자문위원 자문
 5.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심의
 6.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신청하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신청 학기 전까지 자유전공학부 소속이어야 한다.
- ④ 교무처장은 신청 목적, 학문 분야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전공 명칭 및 수여 학위명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⑤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전공 운영 정원)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정원은 최대 20명으로 한다.
-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는 교육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교수)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 ② 지도교수는 설계된 교육과정의 유관 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설계, 수강지도, 학업 진행, 진로지도 및 졸업요건 충족을 지원한다.
- ④ 지도교수는 매 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지도교수의 퇴직, 보직 변경, 연구년, 장기 출장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지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문분야의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③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2조(교육과정 변경)

- ① 승인받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대학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장학금 및 지원)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및 전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전공 지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장학금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지급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전공 포기 및 변경)

- ① 제1전공으로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이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전과 또는 전공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관련 학과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자기주도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전공 변경 시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전공의 폐지)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해당 전공의 학생이 없는 경우
 2. 교육과정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전공을 폐지하는 경우 재학생의 학업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졸업요건)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수여)

- ① 학위명은 신청 당시 제안된 학위명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② 총장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6. 6. 18.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거나 이수 중인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점 및 자격 포함)은 이 지침에 따라 승인되거나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학생에 관한 유리 원칙)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의 졸업요건 및 이수기준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분야

관련 법령 및 근거	양성 분야(직종)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① 교원 양성 분야	▸ 교사	
②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④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약사	▸ 한약사
⑤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	▸ 수의사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응급구조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	▸ 사회복지사	
(4)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 영양사	

[별표 2] 교육과정 편성 기준

구분	기준
교육과정 구성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문 분야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제1전공 교육과정 편성 기준	① 최소 이수학점의 2배수 이상 교과목 편성
	② 3학년 이상을 수강대상으로 하는 전공과목을 전체 편성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 포함
	③ 전공모듈형 전공선택 교과목 9학점 이상 포함
	④ 자유전공학부가 지정한 핵심전공 교과목 포함
복수전공·부전공·마이크로전공 편성 기준	제1전공 교육과정 편성 기준 중 ①부터 ③까지 준용
편성 가능 교과목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경험학습 인정	인턴십, 연구보고서, 체험학습 등 경험학습은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별표 3]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전공 최소 이수학점

구분	최소 이수학점
제1전공	75학점 이상
복수전공	39학점 이상
부전공	21학점 이상
마이크로전공	12학점 이상

[별표 4]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사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전공의 독창성	기존 학과·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등과 차별성이 있는가	25
전공의 학문적 타당성	전공의 목적과 교육과정 구성이 학문적으로 적절한가	25
교육과정의 체계성	교과목 간 연계성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20
학생의 수행 가능성	학생의 학업역량, 전공 적합성 및 이수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가	15
지도 및 운영 여건	지도교수 확보 및 전공 운영 여건이 적절한가	15
합계		100

※ 각 평가영역은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총점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서식1>

자기주도설계전공 계획서

1. 전공명

－ (한글명)

－ (영문명)

2. 전공의 목적과 교과목 구성의 기본 방향

가. 전공의 목적

나. 교과목 구성의 기본 방향

3. 실현가능성

가. (설계전공과 관련해서) 학생 본인의 자질 및 동기

나. 구체적 계획

다. 최종성과물

4. 의의 및 활용 계획

가. 전공의 학문적 의의

나. 학생 진로에의 기여

<서식4>

교과목 이수 학점 현황 및 계획표

학년도	학기	교양과목	전공과목명				학점 계
			제1전공	자기주도 설계전공	그 밖에 다전공 (전공명)	일반선택	
00 학년도	1						
	여름						
	2						
	겨울						
00 학년도	1						
	여름						
	2						
	겨울						
00 학년도	1						
	여름						
	2						
	겨울						
00 학년도	1						
	여름						
	2						
	겨울						
00 학년도	1						
	여름						
	2						
	겨울						
00 학년도	1						
	여름						
	2						
	겨울						
00 학년도	1						
	여름						
	2						
	겨울						
학점 계							

※ 다전공은 복수전공(자유전공학부는 제1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을 포괄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밖에 다전공’을 해당 전공 종류로 바꾸고 괄호 안에 해당 전공 명칭을 기입합니다. 예) 융합전공(인공지능로봇)

자기주도설계전공 교과과정 변경 신청서

☐ 성명		
☐ 학번		
☐ 자기주도설계전공명		
☐ 전공선택시기	학년도	학기

☐ 신청내역

교과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개설학과	학점	비고 (추가/삭제/ 교과구분변경)

※ 기이수 교과목에 대한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변경사유 :

※ 본인의 자기주도설계전공 취지에 맞추어 교과목별로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작성

☐ 자기주도설계전공 지도교수 검토 의견 :

2026. . .

신 청 자 :
자기주도설계전공 지도교수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 1. 사유서 1부.
2. 자기주도설계전공 교과과정표 1부. (*변경사항은 적색 표기할 것)